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류호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8189

발의연월일: 2022. 11. 9.

발 의 자:류호정・이은주・장혜영

심상정 • 배진교 • 강은미

강득구·최혜영·용혜인

김예지 • 유정주 의원

(119]

제안이유

현행법은 수탁·위탁거래 시 위탁기업으로 하여금 위탁의 내용, 납품대금의 금액, 지급 방법, 지급기일 등을 적은 약정서를 발급하도록하고, 물품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에는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철광석, 원유, 펄프 등 원자재 가격 인상이 지속되면서 원재료를 가공하여 위탁기업에 납품 하는 수탁기업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의 수직적인 관계와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조정 신청 을 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여 여전히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부 담은 대부분 수탁기업이 부담하고 있음.

이에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발급하는 약정서에 원자재의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, 그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발급하는 약정서의 내용에 주요 원자재의 종류 및 가격,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(안 제21조제1항).
- 나.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표준약정서를 제정하여 그 사용을 권고하는 등 표준약정서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(안 제21조 제3항 신설).
- 다. 주요 원자재의 가격이 100분의 3 이상 변동한 경우 약정서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, 이를 위반한 경우 납품대금 조정분의 1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(안 제22조제7항 및 제43조제5항 각각 신설).

법률 제 호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1항 중 "그 위탁의 내용, 납품대금의 금액, 대금의 지급 방법, 지급기일, 검사 방법, 그 밖에 필요한"을 "다음 각 호의"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탁·위탁거래를 하는 위탁기업은 제4 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.

- 1. 위탁의 내용
- 2. 납품대금의 금액, 지급 방법 및 지급기일
- 3. 물품등의 검사 방법
- 4.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자재의 종류 및 가격
- 5.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방법
- 6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-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주요 원자재의 종류, 원자재의 가격, 가격 변동에 대한 확인 및 납품대금의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

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표준약정서(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 대금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)를 제정하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에게 그 사용을 권고하는 등 표준약정서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2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⑦ 계약기간 중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약정서에 기재된 주요 원자 재 가격이 100분의 3 이상 변동하였을 경우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기재된 납품대금의 조정 방법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.
-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탁기업이 제7항을 위반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.

제27조제2항 본문 중 "제21조, 제22조"를 "제21조, 제2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"로 한다.

제43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"제4항"을 "제5항"으로 한다.

⑤ 제22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납품대금 조정분의 1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약정서에 관한 적용례)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약정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(약정서의 발급) ① 위탁기	제21조(약정서의 발급) ①
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	
조를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	
그 위탁의 내용, 납품대금의 금	<u>다음 각 호의</u>
액, 대금의 지급 방법, 지급기	
일, 검사 방법, 그 밖에 필요한	<u>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</u>
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	<u>하는 수탁·위탁거래를 하는 위</u>
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. <u><단</u>	탁기업은 제4호 및 제5호의 사
<u>서 신설></u>	항을 생략할 수 있다.
<u><신 설></u>	<u>1. 위탁의 내용</u>
<u><신 설></u>	2. 납품대금의 금액, 지급 방법
	및 지급기일
<u><신 설></u>	3. 물품등의 검사 방법
<u><신 설></u>	4.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
	주요 원자재의 종류 및 가격
<u><신 설></u>	5.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
	른 납품대금의 조정 방법
<u> </u>	6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<u><신 설></u>	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
	른 주요 원자재의 종류, 원자재
	의 가격, 가격 변동에 대한 확
	인 및 납품대금의 조정 등에
	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

<신 설>

② (생략)

제22조(납품대금의 지급 등) ① 제22조(납품대금의 지급 등) ① ~ ⑥ (생 략)

<신 설>

<신 설>

정거래행위 개선) ① (생 략)

정한다.

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표준 약정서(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 른 납품대금 조정에 관한 사항 을 포함한다)를 제정하고 위탁 기업과 수탁기업에게 그 사용 을 권고하는 등 표준약정서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다.

④ (현행 제2항과 같음)

~ ⑥ (현행과 같음)

⑦ 계약기간 중에 제21조제1항 에 따른 약정서에 기재된 주요 원자재 가격이 100분의 3 이상 변동하였을 경우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기재된 납품대금의 조정 방법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.

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탁 기업이 제7항을 위반하여 납품 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지 아 니한 경우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.

제27조(수탁 · 위탁기업 간 불공 제27조(수탁 · 위탁기업 간 불공 정거래행위 개선) ① (현행과

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위탁기업이 제21조, 제22조, 제22조의2, 제23조 또 는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납품대 금의 지급, 법 위반행위의 중 지, 향후 재발 방지,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그 위반사실이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3조, 제4조부터 제12 조까지, 제12조의2, 제12조의3, 제13조, 제13조의2, 제15조, 제1 6조, 제16조의2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또는 「독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」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.

③ ~ ⑦ (생 략)
제43조(과태료) ① ~ ④ (생 략)
<신 설>

같음)
②
제21조,
제2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
,,,
 ,
③ ~ ⑦ (현행과 같음)
∥43조(과태료) ① ~ ④ (현행과
같음)
⑤ 제22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
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납

품대금 조정분의 10배 이하의

	과태료를 부과한다.
<u>⑤</u> 제1항부터 <u>제4항</u> 까지에 따	<u>⑥</u> 제5항
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	
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	
부장관이 부과・징수한다.	